학　　칙

제정 2007. 2. 1.
개정 2008. 2. 1.
개정 2008. 3. 1.
개정 2008.11.10.
개정 2009. 3. 1.
개정 2009. 6. 8.
개정 2009. 9.14.
개정 2009.12. 1.
개정 2010. 9. 6.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2.10.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10. 1.
개정 2013.11.18.
개정 2014.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4.11. 1.
개정 2015. 9. 1.
개정 2015.12.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9. 1.
개정 2016.1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4.19.
개정 2017. 9. 1.
개정 2017.12. 1.
개정 2018. 7. 1.
개정 2019. 1. 1.
개정 2019. 9.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5.11.
개정 2020. 7. 1.
개정 2021. 3. 1.
개정 2021. 4. 1.
개정 2021. 7. 1.

개정 2021. 9. 1.
개정 2021.11. 1.
개정 2022. 3. 2.
개정 2022. 9. 1.
개정 2022.12.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3. 1.
개정 2023. 5. 1.
개정 2023.12. 1.
개정 2024. 1. 1.
개정 2024. 3. 1.
개정 2024. 4. 1.
개정 2024. 4.24.
개정 2024. 6.24.
개정 2025. 1.15.
개정 2025. 3.26.
개정 2025. 4.23.
개정 2025. 8.27.
개정 2026. 1. 1.
개정 2026. 4. 1.
개정 2026.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보편적 목적과 본교의 교훈인 “연구하고 봉사하는 보건의료인”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소재 및 교육조직) ① 본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전캠퍼스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성남캠퍼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하는 의정부캠퍼스를 둔다. (개정 2014.3.1., 2021.4.1.)

② 대전캠퍼스에는 의과대학을 두고, 성남캠퍼스에는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미래융합대학, 첨단학부,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 교양학부를 두며, 의정부캠퍼스에는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미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임상간

호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4.3.1., 2017.3.1., 2021.4.1., 2021.9.1., 2023.5.1., 2024.3.1., 2024.4.1.)

③ 대전캠퍼스 및 성남캠퍼스, 의정부캠퍼스에는 각각 독자적으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1.)

제3조(학생정원과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과대학의 학과 및 학부에 대한 입학정원을 말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

② 각 대학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과 수여학위는 별표 1및 2와 같다. (개정 2023.5.1.)

제3조의2(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원외 전담학과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제3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한다.

③ 정원외 전담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과 대학의 의예과와 의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 기준에 따라 6학기 혹은 7학기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는 제외한다.

제5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의과대학 의 의예과와 의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7.9.1.)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재학연한 내에 본교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학년, 학기 및 학습형태

(개정 2020.3.1.)

제6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및 학습형태)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개정 2020.3.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실습학기 : 현장실습은 필요에 따라 방학 중 실습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3.1.)

② 제2학기의 시작은 2주 내의 범위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임상실습을 하는 학년(의학과 3, 4학년 등)은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학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다른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⑤ 학습형태는 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별 학습은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석학습 외에 원격수업 및 자율학습, 산업체 현장학습, 과제학습 등에 의하여 당해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⑥ 학기 및 학습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주 한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9.6., 2020.3.1.)

② 의과대학 의학과의 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0.3.1.)

④ 제3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같은 학기 내에서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이하 "집중이수제"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제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② 비상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방법 및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 및 그 밖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2학기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1.)

제11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2. 그 밖의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8.11.10., 2013.7.1.)

제12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입학원서와 전형료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1. 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시험전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4.11.1.)

제13조의1(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영향평가) ①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 유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1.)

제14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의 허가는 소속 대학장(전공통합학부장) 혹은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25.1.15.)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 및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입학허가 후 제11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전항의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입학허가 후 제11조 및 전항의 자격요건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학 중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5.11.)

제16조(재입학) 재입학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자

제17조(편입학) ① 해당학년의 정원에 결석이 발생한 경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 소지자의 편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2%,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4% 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 외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④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의료인력 양성학과와 유치원 교사 양성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야간운영학과는 30%)를 정원 외로 3학년 또는 4학년에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7장 소속변경

제18조(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전과/전부)은 학과(학부)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2025.1.15.)

② 소속변경은 대학 내에서 허용한다. (개정 2021.11.1.)

③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9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정해진 납입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9조의2(등록금 심의위원회) ① 본교 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3.21.)

제20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산입력 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1.3.21.)

② 수강과목의 변경절차는 학칙시행세칙Ⅰ 제15조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1.)

③ 실습과목을 제외하고는 한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총장이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2018.7.1., 2019.1.1., 2019.9.1.)

④ 캠퍼스 간 교차수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1.)

제20조의1(사전신고) 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교수가 교무혁신처에 신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개정 2024.3.1.)

② 제1항에 의거 강의 담당 교수의 자녀 수강에 대한 미신고 또는 미준수 등 본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조치하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 또는 위촉을 해지한다. (신설 2019.1.1.)

제9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① 학생이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4주 이상 계속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2.7.1., 2014.3.1.)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1학년도 단위로 하며 휴학은 재학 중 3년(의학과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장애,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 2017.9.1., 2022.9.1., 2023.12.1.)

④ 휴학은 학기 중의 질병, 군입영, 임신·출산·육아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⑤ 의과대학 의학과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3.1.)

③ 의과대학 의학과의 복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연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양식의 자퇴원을 제출하며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을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1.)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6.9.1.)

1. 휴학기간 만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4주 이상 무단결석한 자
3. 매 학기 개강 4주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8.11.10)
4. 학업 성적이 열등하여 재학연한을 이수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
5. 3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다른 대학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자
7. 본인 사망

②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는 전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유급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학사운영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3.1.)

제10장 교과이수, 수료 및 졸업

제25조(교과목) 각 대학 및 학부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및 Pass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Pass과목은 사회봉사과목 등과 같이 본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별도로 정한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26.9.1.)

제26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다.

② (삭제) (개정 2017.12.1.)

③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는 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 및 전공과목과 Pass 과목의 수 및 학점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 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9.1.)

④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1., 2020.3.1.)

제27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되,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단, 0.5학점 교과목의 경우 7.5시간 이상을 강의한다)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2023.12.1.)

제28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4주 전에 각 대학 또는 학부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6.9.1.)

제29조(이수학점) ① 학생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되 최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수강신청 예외사항 및 최저신청학점기준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최저신청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7.9.1., 2023.1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기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는 초과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

③ 각 대학 또는 학부(의과대학 제외)의 신입생은 입학 후 4주 이내에 교양과목 중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 혹은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최고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1.)

제30조(학점인정)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

1. 편입학생이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국내외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원격강좌 포함)
3.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4. 그 밖의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사항

②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또는 연수 등은 협약에 의한 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1.)(개정 2009.12.1.)

③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으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5년 이내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연도에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에 준하여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P(pass), NP(Nonpass)로 한다.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5.12.1.)(개정 2017.3.1.)

④ 국방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및 병무청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 참여에 따라 군복무 및 사회복무 중 행한 봉사시간을 관련 교과의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개정 2023.3.1.)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 휴학 중인 자가 복무 기간 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군이러닝 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복무

기간 내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3.2.1.)

제31조(수료) ①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

1. 제1학년 수료 30학점 이상
2. 제2학년 수료 60학점 이상
3. 제3학년 수료 90학점 이상

② 의과대학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정한다. (개정 2008.3.1.)

제33조(학사경고) ① 각 대학 및 학부의 매 학기말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의예과의 의학과는 2.0 미만)인 자를 학사경고 한다. (개정 2023.12.1., 2026.9.1.)

② 해당 학기에 등록하였지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학사경고 한다. (신설 2023.3.1.)

제34조(유급) ① 3회 이상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대상이 되며, 학업계획서 심의 후 유급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의예과 포함)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의 학사운영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8.3.1., 2009.9.14., 2017.12.1.)

② 유급은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계속 시킬 수 없다.

③ 유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② 계약학과는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21.)

제36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별표2의 학위를 수여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조기졸업 제외) 최소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학과는 별도로 정함) (개정 2014.3.1.)
2.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전공필수와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한 자 (개정 2014.3.1., 2017.12.1., 2023.12.1.)
   가. 단일전공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70학점 이상,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3.12.1.)
   나. 다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주전공의 전공필수(전공기초교과목 포함)를 포함한 전공 42학점 이상과 복수전공(제2전공, 제3전공), 부전공, 소단위전공 등에서 제시한 전공학점의 합을 70학점 이상,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3.12.1.)
   다. 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별도로 정함 (신설 2023.12.1.)
   라.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학생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6.9.1.)
3. 4년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로서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9.3.1., 2023.12.1.)
4. 본교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자격(과정)을 취득 이수한 자(다만,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

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9.1.)(개정 2008.11.10.)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 신청을 할 경우
2. 학사학위 취득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에서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로 전공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이수한 경우 (개정 2009.12.1.)

③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6.)

제37조(다전공, 소단위전공 등) ① 복수전공(제2전공, 제3전공)으로 학과(전공)가 지정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선택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인정한다. (개정 2023.12.1.)

② 부전공으로 학과(전공)가 정한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한다. (개정 2023.12.1.)

③ 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은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과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공능력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단기성 교육과정을 말한다. 소단위 교육과정은 마이크로(Micro) 교육과정과 나노(Nano)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2., 2023.12.1.)

④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나 전공분야가 연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023.12.1.)

⑤ 융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거나 융합된 학문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1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칙은 다전공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1.)

제37조의2 (삭제 2023.12.1.)

제37조의3(진로설계과정) ① 본 대학교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수행하는 진로활동 프로젝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2.1.)

② 진로설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2.1.)

제37조의4(전공 배정) ① 학부로 입학한 자는 입학시점에 예비전공을 신청하며, 1학년 2학기에 전공지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전공을 배정 받아야 한다.

② 전공별 배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전공배정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

제37조의5(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주전공(제1전공) 외에 학부간, 학제간, 캠퍼스간 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전공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

제38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1.)

제39조(졸업시기)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한다.

제40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 부정행위 혹은 과오로 인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요건이 충족되어도 취업, 졸업인증제 등을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10.1)(개정 2014.3.1., 2014.9.1., 2018.12.1., 2022.12.1.)

제40조의3(졸업연기) 학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요건이 충족되어도 졸업인증제,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등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 내 졸업연기로 처리된다. (신설 2023.2.1.)

제11장 평생교육

제41조(시간제등록생) ① 일반사회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에 개설된 학과(부)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적용의 배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6.9.1.)

③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1.)

④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9.1.)

제43조(비정규특별과정) ① 본교에서는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1년 미만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자격인증제) ① 자격인증제는 본교에 설치된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분야의 전문인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시험 및 성적

제45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각 대학의 교수회 또는 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6조(수험자격)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수업시간의 15주 기준 3주 이상 결석한 자는 해

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단, 질병, 학기 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3.21., 2016.9.1., 2017.3.1., 2023.12.1.)

제47조(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시험 또는 논문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③ 장애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의 요청 하에 시험시간 연장, 대필,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9.1.)

제48조(추가시험) 질병, 학기 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한 후 과목 담당교수와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6.9.1.)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수업 참여도를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Pass과목은 P(Pass) 혹은 NP(Nonpass)로 평가한다. (개정 2017.3.1.)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3.1.)(시행 2015.3.1.)

등급	평가	득점
A^+	4.5	95점 이상
A	4.0	90 ~ 94점
B^+	3.5	85 ~ 89점
B	3.0	80 ~ 84점
C^+	2.5	75 ~ 79점
C	2.0	70 ~ 74점
D^+	1.5	65 ~ 69점
D	1.0	60 ~ 64점
P		학점인정
H(Honorship Pass) 등급 중 상위 15%(졸업인증제 및 현장실습과목에 한하며, 상위15%인자 중 과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음) (신설 2016.3.1.)		
I(Incomplete)		성적유예
F	0	59점 이하

③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3장 포상과 징계

제5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에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2조(시행세칙)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및 장학금

(개정 2011.3.21.)

제53조(입학금) ① 입학 및 편입학이 허락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입학금을 내야 한다.

② 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정해진 등록금 외에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금을 기준으로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54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총장이 지정한 기일에 수업료 및 기타 정해진 등록금을 내야 한다.

②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다만,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휴한 자는 휴학 전 납입한 등록금 대체로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8.12.1., 2022.12.1.)

③ 다음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액을 적용받는다.

1. 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휴학하고 복학한 자 (개정 2011.3.21., 2018.12.1., 2022.12.1.)
2. 재입학한 자
3. 유급한 자

제55조(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석, 정학, 제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56조(등록금의 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가계곤란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장학금) ① 본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가계곤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은 학과장(전공장)의 추천과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의 제청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6.9.1.)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59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1.)

제60조(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이 재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무혁신처에 신고하고 자퇴하여야 한다. 만약 소속기관을 사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이 취소된다. (개정 2024.3.1.)

제61조(외국인학생의 입학 및 편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제6장 입학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의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심사를 거친 후 해당 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인학생의 교육이수인정) ① 제6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입학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7.1.)

② 외국인 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2.7.1.)

제16장 공개강좌

제63조(공개강좌) ① 본교에서 직무, 교양 또는 특수목적의 연구상 필요한 학술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개설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직제 및 조직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 및 조직은 관계법령, 정관이 정하는 바 외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장 교수회와 교무위원회

제65조(교수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 캠퍼스별 교수회, 대학 또는 전공통합학부별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26.9.1.)

제66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교수회의 소집) ① 전체 교수회 및 캠퍼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대학

또는 전공통합학부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며 각각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 및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이 궐위 시에는 부총장 및 부학장, 학부장이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9.1.)

② 각 교수회는 구성교수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및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이 소집하고 재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6.9.1.)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총장 및 학장, 전공통합학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6.9.1.)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 공개강좌 등 주요 학사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0조(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학장 또는 전공통합학부장, 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1., 2026.9.1.)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1조(총학생회 설치 및 운영)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대학설립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2조(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73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정해진 학생회비를 내야 한다.

제74조(임무 및 기능) 총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그 밖의 학생 자치활동

제75조(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하고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및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6조(금지활동) 본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장 대학원

제77조(대학원)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1.)

제21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78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학술정보원, 비교과통합교육원, 학보사, 생활관, 예비군대대, 보건실, 부속병원 등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9.3.1., 2009.11.1., 2011.11.1., 2013.7.1., 2018.7.1.)

② 학술정보원 산하에는 학술정보팀, 전산정보팀, 범석의학박물관을 둔다. (신설 2011.11.1.)

③ 전 항의 각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1.)

제79조(부설기관) ① 본교에 평생교육원, 을지아동청소년상담센터, 교육개발연구센터, 임상수기훈련센터 및 각종 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09.11.1., 2011.11.1., 2015.9.1., 2018.7.1., 2021.11.1., 2025.3.26., 2025.4.23.)

② (개정 2018.7.1.)(삭제 2021.11.1.)

③ 전 항의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1.)

제22장 산학협력단 등

제8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본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계약학과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2.1.)

제23장 학칙 개정

제82조(학칙개정) ① 학칙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은 교무혁신처장에게 학칙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

② 교무혁신처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무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10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1.)

③ 학칙개정안의 공고는 학내 게시판 또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한다.

④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규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개정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공포한다. (개정 2009.6.8.)

제24장 자체평가

(신설 2009.6.8)

제83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연구·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장 학교기업

(신설 2009.9.14.)

제84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에 따르며,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을지대학교 학교기업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및 관련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학칙에 기재한다.

④ 학교기업 설치·운영현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11.18.)

제85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운영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30%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26장 장애학생지원

(신설 2016.3.1.)(개정 2020.2.1.)

제87조(장애학생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인권센터 소수학생지원실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

제88조(장애학생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장 학생 집단활동

(신설 2016.11.1.)

제89조(학생집단활동) ① 집단활동(대학전체 행사, 학과행사,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둔다.

② 책임자는 집단활동 시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③ 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집단활동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장 보 칙

제9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6.8., 2009.9.14.)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통합에 따른 승계)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에

서 학생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적용한 학칙과 제규정은 을지대학교가 승계한다.
③ (폐지되는 을지의과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을지의과대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신설된 을지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 대학의 병원경영학과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 내에 전공필수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울 경우 졸업 최소 학점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④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은 2009년 2월까지(2년제 학과는 2008년 2월 29일까지, 3년제 학과는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대학 및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대학의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을지대학교에 개설된 유사과목을 수료하도록 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본교 정원 외나 타 전문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 평생교육원에 2006년까지 입학한 전문학사 수강생으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을지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10.9.1)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에 대한 기준 적용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보건과학대학 및 보건산업대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만, 학부폐지, 부속·부설기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되는 의료경영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의료경영학과는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 당시 의료경영학과에 재적하는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여가디자인학과를 스포츠아웃도어학과로 명칭변경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의 시행 전에 여가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년 2월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스포츠아웃도어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제49조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별표1 및 별표2의 피부관리학과를 미용화장품과학과로 명칭변경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 물리치료학과 수여학위 변경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의 시행 전에 피부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8년 2월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용화장품과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교 모든 규정에서 학칙 별표1의 보건산업대학을 별표1의2 바이오융합대학으로 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관련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 조정) 2021학년도 바이오융학대학에 첨단의료융합학부 ·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를 신설하며 편제정원 완성년도인 2024학년도에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간호학과(의정부),임상병리학과(의정부), 스포츠아웃도어학과(의정부), 중독재활복지학과(의정부)의 의정부캠퍼스 위치변경

(일부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인가일(사립대학정책과-2391, 2021.2.26.)로부터 적용한다.
② 상기 1항에 따라 대전캠퍼스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는 통합이전하며, 성남캠퍼스 바이오융합대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이전하여, 2024학년도 3월부터는 의정부캠퍼스에만 존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의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남캠퍼스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스포츠아웃도어학과 학위명 변경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체육학사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별표1의 2, 3, 4 바이오융합대학 아동학부를 제외한 학부의 폐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간호학과 증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정원 배정 인가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3.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조정) 2024학년도 성남캠퍼스 미래융합대학에 바이오공학부, 스마트의료정보학부, 휴먼서비스학부를 신설하며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 의료IT학과,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의료경영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미래융합대학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의료공학전공,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의료경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 의료IT학과,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의료경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바이오융합대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장례지도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아동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레저산업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장례산업전공, 사회복지전공, 중독상담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바이오융합대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장례지도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아동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바이오융합대학 미용화장품과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화장품과학전공, 휴먼서비스학부 뷰티아트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바이오융합대학 미용화장품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바이오융합대학 유아교육학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는교원자격취득대상자로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졸업시까지 소속을 유지한다.
6. (2024학년도 이전 바이오융합대학 입학 재적생에 대한 특례) 바이오융합대학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융합대학으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과, 학위명은 졸업시까지 유지한다. 단,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미래융합대학 학부 전공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4.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조정) 2025학년도 성남캠퍼스에 첨단학부, 자연계열학부 및 인문사회계열학부를 신설하고, 의정부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며, 이전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4.4.1.)

1.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및 외국인전담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 및 첨단학부의 전공을 자유선택할수 있으며, 캠퍼스의 구분없이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2. 미래융합대학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의료경영전공은 보건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로 편성하며, 의료경영전공 재적생은 보건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및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재적생은 변경된 자연계열학부에, 휴먼서비스학부 재적생은 변경된 인문사회계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스마트의료정보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은 변경된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4.1.)
4. 미래융합대학으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과(학부), 학위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단,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연계열학부 및 인문사회계열학부 전공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5.8.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2025.8.1.)」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학기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본 학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적용 기간 동안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적용 기간	2025학년도 2학기 ~ 2027학년도 1학기
적용 조항	제7조, 제26조 등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0.9.6., 2013.3.1., 2014.9.1.)

2016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적용

대학	학 과 명		입학정원	대학	학 과 명	입학정원
의과대학	의 예 과		40	보건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40
	의 학 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52
	임상병리학과		37		보건환경안전학과	60
간호대학	간호학과	대 전	70		의료경영학과	40
		성 남	80		의료IT마케팅학과	6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40
	안경광학과		70		스포츠아웃도어학과	40
	의료공학과		40		장례지도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유아교육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중독재활복지학과	40
	치위생학과		70			
	물리치료학과		70			
	미용화장품과학과		40			

［별표 1의2］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16.3.1.)(개정 2021.7.1.)

2017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17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임상병리학과	37
간호대학	간호학과(대전)	70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안경광학과	7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7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40
	보건환경안전학과	60
	의료IT학과	6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40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6
	스포츠아웃도어학과	35
	장례지도학과	40
	유아교육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	36
계		1,119

［별표 1의3］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17.4.19.)(개정 2021.4.1., 2021.7.1.)

2018~2020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18~2020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임상병리학과	37
간호대학		간호학과(대전)	70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40
		보건환경안전학과	40
		의료IT학과	4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50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6
		스포츠아웃도어학과	35
		장례지도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	36
바이오융합대학	아동학부	유아교육학과	20
		아동학과	20
계			1,029

［별표 1의4］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20.5.22.)(개정 2021.4.1., 2021.7.1., 2021.9.1.)

2021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1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70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40
		보건환경안전학과	40
		의료IT학과	40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3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50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6
		스포츠아웃도어학과(의정부)	35
		장례지도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의정부)	36
바이오융합대학	아동학부	유아교육학과	20
		아동학과	20
계			1,059

［별표 1의5］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21.9.1.)(개정 2023.3.1.)

2022~2023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2~2023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84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37
		식품산업외식학과	38
		보건환경안전학과	40
		의료IT학과	40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3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45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2
		스포츠아웃도어학과(의정부)	35
		장례지도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의정부)	36
바이오융합대학	아동학부	유아교육학과	20
		아동학과	20
계			1,059

［별표 1의6］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23.5.1.)

2024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4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84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식품영양전공	160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의료공학전공	160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의료경영전공	
	휴먼서비스학부	레저산업전공	143
		뷰티아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장례산업전공	
		중독상담전공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	
계			1,029

※ 미래융합대학 학부단위 모집이며, 전공선택은 자율선택제도임.

［별표 1의7］ (신설 2024.3.1.)(개정 2024.4.1., 2024.4.24., 2026.4.1.)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2025~2026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5~2026
의과대학	의예과	100
	의학과	(100)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84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의료경영학과	40
자유전공학부(의정부)		71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40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	-
자연계열학부	식품영양전공	172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의료공학전공	
인문사회계열학부	레저산업전공	130
	뷰티아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	
	중독상담전공	
	장례산업전공	
계		1,079

［별표 1의8］(신설 2026.4.1.)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2027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7
의과대학	의예과	46
	의학과	(46)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84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의료경영학과	40
자유전공학부(의정부)		71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40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	-
자연계열학부	식품영양전공	172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의료공학전공	
인문사회계열학부	레저산업전공	130
	뷰티아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	
	중독상담전공	
	장례산업전공	
계		1,025

［별표 1의9］(신설 2026.4.1.)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2028~2031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28~2031
의과대학	의예과	48
	의학과	(48)
간호대학	간호학과(의정부)	84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의정부)	37
	임상병리학과(성남)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의료경영학과	40
자유전공학부(의정부)		71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40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	-
자연계열학부	식품영양전공	172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의료공학전공	
인문사회계열학부	레저산업전공	130
	뷰티아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상담전공	
	중독상담전공	
	장례산업전공	
계		1,027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개정 2010.9.6, 2012.7.1, 2014.9.1)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 예 과			보건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의 학 과		의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대 전	간호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성 남	간호학사		의료IT마케팅학과	이학사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경영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			

[별표 2의2]

학사학위 수여구분

(신설 2017.4.19.)(개정 2020.7.1.)(개정 2021.4.1.)

2017~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 예 과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	공학사
	의 학 과		의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대 전	간호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
		성 남	간호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의료IT학과	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경영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 아동학과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별표 2의3]

학사학위 수여구분

(신설 2020.7.1.)(개정 2021.4.1.)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 예 과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	공학사
	의 학 과		의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대 전	간호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
		성 남	간호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의료IT학과	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체육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별표 2의4］

학사학위 수여구분

(신설 2021.4.1.)(개정 2023.5.1.)

2021~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 예 과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	공학사
	의 학 과		의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정부	간호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성 남	간호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의정부	보건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성 남	보건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의료IT학과	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체육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공학사

［별표 2의5］

학사학위 수여구분

(신설 2023.5.1.)

202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 예 과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식품영양 전공	이학사
	의 학 과		의학사			식품생명공학 전공	공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정부	간호학사			안전공학 전공	공학사
		성 남	간호학사			화장품과학 전공	이학사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의정부	보건학사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의료공학 전공	공학사
		성 남	보건학사			빅데이터인공지능 전공	공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의료경영 전공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휴먼서비스학부	레저산업 전공	체육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뷰티아트 전공	미용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시각디자인 전공	미술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장례산업 전공	보건학사
						중독상담 전공	문학사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청소년상담 전공	문학사

［별표 2의6］ (신설 2024.3.1.)(개정 2024.4.1.)

학사학위 수여구분

202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table>
<tr><th>대학</th><th colspan="2">학 과 명</th><th>수여학위</th><th>대학</th><th>학 과 명</th><th>수여학위</th></tr>
<tr><td rowspan="2">의과대학</td><td colspan="2">의 예 과</td><td></td><td rowspan="2">첨단학부</td><td>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td><td>공학사</td></tr>
<tr><td colspan="2">의 학 과</td><td>의학사</td><td>글로벌빅데이터AI학과</td><td>공학사</td></tr>
<tr><td rowspan="2">간호대학</td><td rowspan="2">간호학과</td><td>의정부</td><td>간호학사</td><td rowspan="6">자연계열학부</td><td>식품영양전공</td><td>이학사</td></tr>
<tr><td>성 남</td><td>간호학사</td><td>식품생명공학전공</td><td>공학사</td></tr>
<tr><td rowspan="5">보건과학대학</td><td rowspan="2">임상병리학과</td><td>의정부</td><td>보건학사</td><td>안전공학전공</td><td>공학사</td></tr>
<tr><td>성 남</td><td>보건학사</td><td>화장품과학전공</td><td>이학사</td></tr>
<tr><td colspan="2">안경광학과</td><td>안경광학사</td><td>의료공학전공</td><td>공학사</td></tr>
<tr><td colspan="2">응급구조학과</td><td>보건학사</td><td rowspan="6">인문사회계열학부</td><td>레저산업전공</td><td>체육학사</td></tr>
<tr><td colspan="2">방사선학과</td><td>보건학사</td><td>뷰티아트전공</td><td>미용학사</td></tr>
<tr><td colspan="2">치위생학과</td><td>치위생학사</td><td>시각디자인전공</td><td>미술학사</td></tr>
<tr><td colspan="2">물리치료학과</td><td>물리치료학사</td><td>사회복지전공</td><td>사회복지학사</td></tr>
<tr><td colspan="2">의료경영학과</td><td>보건학사</td><td>아동청소년상담전공</td><td>문학사</td></tr>
<tr><td colspan="4"></td><td>중독상담전공</td><td>문학사</td></tr>
<tr><td colspan="4"></td><td>장례산업전공</td><td>보건학사</td></tr>
</table>

［별표 3］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현황 (신설 2013.11.18)

학교기업명	관련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소재지)
EMF (을지메디컬푸드)	식품산업 외식학과	10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1.1., 2026.1.1..)

제 0000 호

학 위 증

성 명 : 0 0 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함

전 공 : ○○○학사 ○○○ 전공(주전공)

: ○○○학사 ○○○ 전공(제2전공)

: ○○○학사 ○○○ 전공(제3전공)

부 전 공 : ○○○○

소단위전공 : ○○○○

0000 년 월 일

을 지 대 학 교

총 장
의학박사 홍 성 희

학위등록번호 : 을지대 0000(학)0000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박사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박사 ○ ○ ○

학위번호 : 을지대_학점_○○○○ - ○○○○